

##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

|     |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인 | 성명 | (한글) | 소속   | 직위<br>(직급 등)<br>( )   |
|     |    | (한자) | 생년월일 | 전화번호<br>(휴대전화)<br>( ) |
|     | 주소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심사청구<br>내용 | ※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, 주식명 등을 기재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철회 사유 | ※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5제6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 그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중

심사청구 철회 대상주식 내용

[illegible]

## 기재 요령

1.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(결혼한 딸 제외)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.
2. ‘발행인(주식명)’란에는 상장주식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(제3시장주식)은 종목명(예 : ○○증권, ××전자)을 기재하고, 그 외 비상장 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기재하십시오.
3. ‘종목코드’란에는 상장주식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(제3시장주식)은 종목코드를 기재하고, 그 외 비상장주식은 "비상장"으로 기재하십시오.
4. ‘가액’란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였던 ‘가액’을 기재하십시오.
5. ‘취득일자’란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였던 ‘취득일자’를 기재하십시오.